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26
----------	-------

발의연월일 : 2026. 9. 17.

발 의 자 : 최기상·김재원·윤준병
김영배·권칠승·김남준
김영환·한민수·한정애
정준호·문진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시장의 확대 등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해 낮아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를”을 “100분의 6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u>100분의 2</u>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u>5억원</u>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과징금) ① ----- ----- ----- ----- ----- <u>100분의 6</u> 을 ----- ----- -----. ----- ----- ----- ----- ----- ----- ----- <u>30</u> 억원-----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